

예산총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8,739,728	11,662,192
일반회계	349,351,565	10,480,547
특별회계	39,388,163	1,181,645
공기업특별회계	34,770,696	1,043,121
상수도공기업	17,272,765	518,183
하수도공기업	17,497,931	524,938
기타특별회계	4,617,467	138,524
주택사업	813,405	24,402
의료급여기금운영	783,163	23,495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95,498	5,865
공영개발사업	449,469	13,484
장기미집행	728,294	21,849
농공지구조성사업	399,349	11,980
기반시설	57,272	1,718
수질개선	922,998	27,6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8,019	8,04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별첨)"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85,51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제3회 추경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 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며 또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한다.